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19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4월 27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행정안전부의 「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부합하는 기금 수입과목으로 수정해 용어 사용 혼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기금 조성 재원 항목을 기금수립기준의 수입과목에 부합하도록 각각 수정함(안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안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안 제4조제2항제4호 삭제).
- 직위 명칭을 현행에 맞게 수정함(안 제7조제1항제2호, 안 제9조제2항제1호).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 본문 외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시로부터의 전입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
3.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융자금 회수
4. 보조금·차입금·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

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,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시로부터의 전입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
3. 보조금·차입금·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

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2항제1호 중 “소상공인지원과장” 을 각각
“소상공인정책담당관” 으로 하고, 안 제9조제2항제1호 중 “공정경제과장” 을
“공정경제담당관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의 <u>출연금</u> 2. 용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. 그 밖에 출연금·보조금·차입금·예수금 및 용자상환금 4.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<p>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의 <u>출연금</u> 2.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. 그 밖에 출연금·보조금·차입금·예수금 및 용자상환금 	<p>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의 <u>기금전출금</u> 2. <u>용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</u> 3. <u>그 밖에 출연금·보조금·차입금·예수금 및 용자상환금</u> 4. <u>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</u> <p>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의 <u>기금전출금</u> 2. <u>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</u> 3. <u>그 밖에 출연금·보조금·차입금·예수금 및 용자상환금</u> 	<p>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시로부터의 전입금</u> 2. <u>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</u> 3. <u>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용자금 회수</u> 4. <u>보조금·차입금·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</u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시로부터의 전입금</u> 2. <u>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</u> 3. <u>보조금·차입금·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</u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4.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</p> <p>③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의 <u>출연금</u>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<u>출연</u>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</p> <p>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<u>사무중</u>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<u>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</u>」에서 정하는 관서 <u>회계관계 공무원</u>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	<p>4. <u>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</u></p> <p>③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의 <u>기금전출금</u>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<u>전출</u>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</p> <p>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<u>사무 중</u>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<u>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</u>」에서 정하는 관서 <u>회계관계공무원</u>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	<p><삭 제>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1. 기금운용관 : 기금운용 <u>담당 정책관</u></p> <p>2. 분임기금운용관 : 소상공인지원과장 (융자계정), 경제정책과장(투자계정)</p> <p>3. 기금출납원 :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(융자계정),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(투자계정)</p> <p>② 「<u>지방재정법</u>」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<u>경리관</u>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</p> <p>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「<u>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</u>」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1. 기금운용관 : 기금운용 <u>담당정책관</u></p> <p>2. 분임기금운용관 : <u>소상공인지원과장</u> (융자계정), 경제정책과장(투자계정)</p> <p>3. 기금출납원 :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(융자계정),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(투자계정)</p> <p>② 「<u>지방회계법</u>」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<u>재무관</u>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</p> <p>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「<u>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</u>」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1. 기금운용관 : 기금운용 담당정책관</p> <p>2. 분임기금운용관 : <u>소상공인정책담당관</u> (융자계정), 경제정책과장(투자계정)</p> <p>3. 기금출납원 :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(융자계정),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(투자계정)</p> <p>②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기금운용심의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용자계정: 소상공인지원과장, 공정경제과장 2. 투자계정: 경제정책과장 3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, 민간경제단체 임직원, 금융인,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<p>③ (생략)</p>	<p>제9조(기금운용심의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용자계정: <u>소상공인지원과장, 공정경제과장</u> 2.~3. (현행과 같음)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9조(기금운용심의회 구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용자계정: <u>소상공인정책담당관, 공정경제담당관</u> 2. 투자계정: 경제정책과장 3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, 민간경제단체 임직원, 금융인,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로부터의 전입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
3.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용자금 회수
4. 보조금·차입금·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

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로부터의 전입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
3. 보조금·차입금·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

③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의
기금전출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 단서 중 “사무중”을 “사무 중”으로 하고, “서울특별시 재무
회계규칙”을 “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”으로 하며, “회계관계 공무원을

기금관리 공무원” 을 “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담당 정책관” 을 “담당정책관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소상공인지원과장” 을 “소상공인정책담당관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지방재정법” 을 “지방회계법” 으로 하고, “경리관” 을 “재무관” 으로 하며, 같은 조제3항 중 “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” 을 “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“소상공인지원과장” 을 “소상공인정책담당관” 으로 하고, “공정경제과장” 을 “공정경제담당관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<u>유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시의 출연금</u> 2. <u>유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</u> 3. <u>그 밖에 출연금 · 보조금 · 차입금 · 예수금 및 유자상환금</u> 4. <u>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</u> <p>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시의 출연금</u> 2. <u>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</u> 3. <u>그 밖에 출연금 · 보조금 · 차입금 · 예수금 및 유자상환금</u> 4. <u>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</u> <p>③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의 <u>출연금</u>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<u>출연</u>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</p>	<p>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시로부터의 전입금</u> 2. <u>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</u> 3. <u>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유자금 회수</u> 4. <u>보조금 · 차입금 · 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</u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시로부터의 전입금</u> 2. <u>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</u> 3. <u>보조금 · 차입금 · 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</u> <p><삭 제></p> <p>③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의 <u>기금전출금</u>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<u>전출</u>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<u>사무중</u>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<u>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</u>」에서 정하는 관서 <u>회계관계 공무원</u>을 <u>기금관리 공무원</u>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1. 기금운용관 : 기금운용 <u>담당 정책관</u></p> <p>2. 분임기금운용관 : <u>소상공인지원과장</u> (융자계정), 경제정책과장(투자계정)</p> <p>3. 기금출납원 :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(융자계정),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(투자계정)</p> <p>② 「<u>지방재정법</u>」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<u>경리관</u>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</p> <p>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「<u>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</u>」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9조(기금운용심의회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	<p>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<u>사무 중</u>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<u>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</u>」에서 정하는 관서 <u>회계관계공무원</u>을 <u>기금관리공무원</u>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1. 기금운용관 : 기금운용 <u>담당정책관</u></p> <p>2. 분임기금운용관 : <u>소상공인정책담당관</u> (융자계정), 경제정책과장(투자계정)</p> <p>3. 기금출납원 :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(융자계정),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(투자계정)</p> <p>② 「<u>지방회계법</u>」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<u>재무관</u>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</p> <p>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「<u>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</u>」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9조(기금운용심의회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용자계정: <u>소상공인지원과장, 공정경제과장</u></p> <p>2. 투자계정: 경제정책과장</p> <p>3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, 민간경제단체 임직원, 금융인,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</p> <p>③ (생략)</p>	<p>1. 용자계정: <u>소상공인정책담당관, 공정경제담당관</u></p> <p>2. 투자계정: 경제정책과장</p> <p>3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, 민간경제단체 임직원, 금융인,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